

‘甲甲한’ 발주처... 부당 계약조건 여전

정부, 불공정관행 근절 ‘칼’ 빼들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공기연장 손실·폐기물 처리 비용 등 아직도 건설사 전가

정부가 발주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등 일부 발주기관들이 여전히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배치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어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보증금, 공사자재의 검사, 지급 자재 등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이들 일반 사항 이외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제는 특수조건에 건설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발주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수조건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설계변경 공사대금 부당 감액으로 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은 LH조차 건설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담고 있다. LH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 노무비의 산정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따른 실발생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특수조건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발생한 간접 노무비가 계약 당시 건설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 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상 간접 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 간접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설계내역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 연장 간접비의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정해 공기 연장에 따른 손실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LH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국가계약법·계약예규와 상충되는 부당 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예상 수량은 착공 전 건설사가 설계서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사가 산출한 폐기물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사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LH 공종별 견적기준’을 만들어 폐기물 종류별로 수량 내역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량 내역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초과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LH 공종별 견적기준에 따라 산출한 폐기물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LH 공종별 견적기준에 따라 산출한 폐기물과 실제 폐기물의 차이가 클수록 건설사의 손실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 노무비의 실비 산정 과정에서 상한선을 두거나 폐기물 처리에 있어 LH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반하는 부당 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남기자 knp@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 17일 건설회관서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사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

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를 주제로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급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150여명의 건설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등 행사가 진행된다.

발주처 입맛대로 운용 ‘계약 특수조건’... 제어장치 없다

발주기관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담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만큼 별다른 논란거리가 없다.

반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발주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의 공사계약특수조건상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규정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늘어난 공사기간에 지급되는 간접노무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계약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외부기관 등 심의 없이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 우월적 지위 남용한 부당조건 나올 여지 커 정부 스크린 장치 필요

그러나 여기엔 부당한 조건이 붙는다. 계약 당시 건설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보다 크면 설계내역서를 적용하도록 한 점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실비를 산정할 때 인위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해둔 것이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기관들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외부기관 등의 심의 없이 발주기관 내부적인 절차만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이 가능해 부당한 계약조건이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들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을 전가할 만한 내용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이 부당한 계약조건이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발주기관의 또 다른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임의대로 개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가 발주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고칠 때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公共공사 수주 급감… 입찰제도 영향 커”

올들어 4월까지 11.9兆
2014년보다 20% 줄어

업계 “기술형입찰 잇단 유찰
중심제·중평제 발주지연 탓”

올해 건설사 공공공사 수주액이 급감한 원인으로 입찰제도 영향이 큰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중평제) 공사 발주가 늦어진 데다, 실상가상으로 기술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심각한 ‘공공공사 보릿고개’를 맞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집계한 국내건설 수주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11조9519억원으로 지난해(13조5801억원)보다 12% 줄었다. 특히 2014년(14조9179억원)보다는 무려 19.9%가 감소했다. 특히 4월 공공공사 수

건설사 1~4월 공공공사 수주액 추이



주액은 2조8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4%나 줄었다.

건설협회가 매일 조사·발표하는 국내 건설 수주동향은 통계청 건설경기동향 조사와 건설협회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자료다.

연구기관과 건설업계에서는 입찰제도 영향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심제, 중평제 심사기준 수립이 늦어지며 공사발주가 연초부터 특히

줄었다. 게다가 기술형 입찰 공사 유찰사태가 겹치며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 들어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중심제와 중평제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종합심사낙찰제 1호 발주공사인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는 심사기준을 수립하느라 2월 초에야 발주됐다.

건설업계로서는 특히 1분기에 공공공사 ‘보릿고개’를 맞은 셈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낙찰제는 아직 1건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

1분기 기술형 입찰 유찰사태도 수주액 감소를 부채질했다.

올해 1분기 기술형 입찰 발주공사 10건 중 6건 이상은 적어도 1차례 이상의 유찰을 경험했다. (본지 3월31일자 1면 참조)

이는 건설사들이 낮은 공사비로 입찰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 설계보상비 현실화, 유찰된 사업 수의계약 전환, 설계점수 가중치 확대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홍일 실장은 “중평제 심사기준이 수립되고, 중심제 발주 공사가 점차 늘어나면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공사 수주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사 공공공사 수주액은 상저하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4월까지 공공공사 수주부진으로,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종합평가낙찰제의 신속한 시행 등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